



행정청의 축사신축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처방안



이형찬

변호사·수익사
법무법인 수호

문의

leeavocat@gmail.com
010-6742-0618

오리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축사의 수용, 축사의 하천공사에 의한 편입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리농가는 축사의 이전을 위해 행정청으로부터 축사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리농가가 ‘건축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축사 건축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행정청의 이러한 불허가 처분은 보통 축사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 기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상 반복적이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은 보통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축사 건축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불허가’로 의결되는 경우, 행정청은 그에 따라 축사 건축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행정청이 심의결과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오리농가에 처분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오리농가의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또한, 행정청은 축사 신축허가를 거부할 ‘충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행정청은 축사 신축 예정지의 주변 마을이 녹색농촌체험 마을, 팜스테이 마을, 자연생태우수 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사유여야 하는 것이지,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생태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축사의 건축을 불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구체적 사유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자연생태보전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법치행정(法治行政)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즉,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추후 재지정이 문제되더라도, 이러한 운영이익은 마을 주민들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고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농촌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연적 자원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오리농가가 농장을 운영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변 마을의 녹색농촌체험 마을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

여야 하고, 불허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오리농가의 이전 과정은 오리농가에게는 매우 중대한 과정이다. 부지매입비용, 축사설계 비용, 관련 금융 비용 등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소요된다.

행정법 법리에 입각한 축산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在)
-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의료, 보험, 식품·농림·축산, 유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의료문제 변호사모임 재무이사
- 건국대학교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한수의사회 청년소통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발전대책마련 TF회의 위원(前)